

온 마을이 함께하는 탄생의 축하

모두를 위한 출생등록



국제아동인권센터 International Child Rights Center x 두루 Duroo

목차

Part 1. 출생등록과 아동권리	8
Part 2. 출생등록 절차	12
I. 부모를 알 수 있는 경우	13
1.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13
2.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21
II.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	24
1. 기아인 경우	24
2. 기아가 아닌 경우	25
Part 3. 제언	34

관련 서식

[서식 1] 출생신고서	38
[서식 2] 출생증명서	41
[서식 3] 출생사실 증명서면	42
[서식 4] 출생확인 신청서	43
[서식 5] 기아발견조서	44
[서식 6] 성·본창설 허가 신청	45
[서식 7]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 신청서	46
[서식 8]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 증명서	47
[서식 9] 주민등록 신고서	48
[서식 10] 주민등록신고 확인서	49
[서식 11] 가족관계등록 신분표	50
[서식 12]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서	51
[서식 13] 인우보증서	53

관련 예규

§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2호]	54
§ 의사능력 없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변경신고·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9호]	57
§ 사건본인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의 신고인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80호]	57
§ 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생증명서 등에 관한 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20호]	58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0호]	59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82호]	61
§ 기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3호]	63
§ 기아 아닌 고아 등에 대한 성·본의 창설절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5호]	65
§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 및 가족관계등록창설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7호]	66
§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구별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3호]	68
§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0호]	69
§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창설절차 예규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2호]	72
§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9호]	73
§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2호]	74
§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에 대한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26호]	76
§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의 보존·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2호]	78

서문

한 아이가 세상을 마주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았던 존재가 280일을 버티고 버티 세상에 나오는 순간의 감동은 가히 놀라울 따름이지요. 부모는 280일 동안 버팀목이 되어주던 존재,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축하받아 마땅한 이 기적을 맞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낮은 출생률을 걱정하는 우리나라에서 출생 후 유기되는 아동의 수는 2007년 305명, 2010년 191명, 2013년 285명, 2016년 264명으로 매년 200-300명에 이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 채, 혹은 자신의 존재가 사라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일 수은주의 기록을 갈아치우던 2018년의 뜨거운 여름날, 국제아동인권센터와 두루는 흐르는 땀조차 말려버릴 것 같은 태양을 마주하며 전국을 다녔습니다. 출생의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아동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어디에도 아동의 잘못은 없었으나, 이들이 존재를 인정받기 위한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구청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경찰도 만났고, 법원에 서류도 제출하였으며, 검사, 판사와도 수차례 통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행히 성과 본 창설 허가를 통해 존재가 인정된 아동도 있었고, 친엄마를 찾아 전달받은 출생증명서를 통해 출생신고가 다시 된 아동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의 마침표가 찍힌 것은 아닙니다. 무더위를 지나 살을 에는 찬바람이 찾아왔지만 여전히 출생이 기록되지 못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구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10분으로 충분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출생이 기록되는 순간이 좀처럼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출생등록이란,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존재를 국가가 확인하기 위한 첫 단추입니다. 당연히 국가는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을 실현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이 발견되었을 때 공무원도, 사회복지사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도, 검사도, 판사도 어떻게 출생등록을 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온 마을이 함께하는 탄생축하]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혼자하기에는 어렵기에 사단법인 두루가 함께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지평의 후원을 통해 우리의 다양한 출생신고 경험을 안내하고자 본 가이드북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가이드북은 크게 3장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출생등록이 왜 중요하며, 출생등록을 위한 책임을 가진 의무이행자가 누구인지를 다루었습니다. 두 번째는 출생신고와 관련된 제도와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직접 경험한 사례를 기반으로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를 돕기 위한 과정을 안내하였습니다. 세 번째 장에서는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이 가능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서에 100마리 양을 키우는 사람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온 노력을 기울이고, 마침내 찾았을 때 잔치를 벌이며 크게 기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 가이드북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알 수 없던 0.001%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빠짐없이 온전히 한 인간으로 존재를 인정받는 사회, 그 사회를 위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본 가이드북은 국제규범이 제시하는 원칙과 국내법·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출생신고를 진행하기 위한 사례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부족한 부분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는 과정 속에서 문의사항이나 보완할 내용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이드북의 취지에 공감하여 작품을 수록할 수 있도록 동의해주신 이난희 시인과 출판사 파란에 감사드립니다. 본 가이드북이 현장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심심한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2019년을 맞이하며

집필진 일동

☎ 출생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QR 코드를 스캔해 주세요!



애애라는 인형

흑점을 지닌 물방울이
산도 밖으로 미끄러진다

어제는 나의 궁전 바깥으로부터 보내오는 어떤 신호를 들었다
새로운 암호를 떠올리며 죽은 척했지

소용돌이치는 불길함이 차갑게 쏟아지는 시간

지문을 잃은 붉은 핏덩이
암문을 걸어 나온다

악몽처럼, 비린내가 부푸는 검은 봉지 속에서
아주 자고 갈 요량으로 누워 생각한다

나는 동물세포였을까, 식물세포였을까

자라다 만 손가락 사이로
차갑게 굳어 가는 새로운 우주가 윤곽을 드러낸다

아무도 놀아 주지 않아 심심했던 세포 덩어리

심심한 건 딱 질색이어서
망가진 심장을 움켜쥐며 날아간다

겉에서 나란히 날고 있는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아무나가 아닌 애애들아

다시는, 우리도 모르게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지 말자



Part 1. 출생등록과 아동권리

출생등록 될 권리란 태어난 한 인간으로서 그 존재를 인정받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이름을 갖고, 국적을 취득하며, 가능한 한 부모를 알고, 부모에게 양육받아야 한다.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아동의 정체성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본적인 건강권, 교육권 및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나이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성인 연령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 또는 노동시장을 직면하거나 군대에 징집될 수도 있습니다. 투표권 행사나 여권발급 등 신분증명이 요구되는 절차에서도 배제됩니다. 그 결과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나 차별과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더욱 큽니다.

인천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고단6538 판결

출생신고는 사회구성원으로서 교육, 보건의료, 사회보장 등 공적서비스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필수적인 요소이며 아동의 정체성과 존재를 인정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관심과 보호의 대상으로 편입하는 사회적 의미의 인간으로 겪는 첫 관문에 해당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뿐만 아니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및 다양한 유엔 결의안들은 출생등록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생이 공적으로 기록되었을 때, 비로소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중대한 책무가 있습니다.

본 가이드북은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보장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안내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다만, 출생등록이라는 단어가 다소 낯설지도 모르겠습니다. 출생신고는 알겠는데, 출생등록이 뭐냐구요?

국내법상 출생등록은 ① 부모 등 법이 정하는 신고의무자가 관공서에 출생신고를 한 이후, 또는 ②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법원의 성과 본 창설허가와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 결정을 받아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를 한 이후,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공적 기관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 사실을 등록(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신고가 있더라도 등록이 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지 않으면, 한 사람의 존재가 완전히 공적으로 인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제인권규범도 이러한 점을 강조하여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Right to Birth Registraion)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출생신고’나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존재를 알고, 기록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은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가이드북은 현행 법·제도에 따른 출생등록 과정을 안내하되, 국가의 의무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첫서리

가위바위보

나는 숨어 있는 사람

누가 술래인 줄도 모르고 숨어들 때

함께 사라지고 싶은 것들

꽃들의 심장 소리 함께 듣는다

햇살 내려서고 그늘 뒷걸음쳐도

머리카락 한 올 보이지 않는 나는

방금 태어나고, 지금 막 버려진 사람

공중의 물방울 내려와 식어 간 땀줄 덮을 때

굳어 가는 내 잠을 시작으로 쥐눈이콩 서리태 올금까지

하얗게 지워진다

싱싱한 울음으로

배고픈 나는 떨어진 꽃망울을 물고 잠이 든다

자라지 않는 내 맨발은 날것들의 소란으로 근질거려

왜 아무도 날 찾지 않나

별관에 서서, 구름에게 들키고

하얀 국화 향에 취해 재채기를 하고 싶지만

나는 숨어 있는 사람

아무도 이름을 불러 주지 않아

허허별관에 눈을 가리고 이제부터 내가 술래

당신이 찾을 때까지, 악몽은

찬 발 앞에 엎드려 나를 은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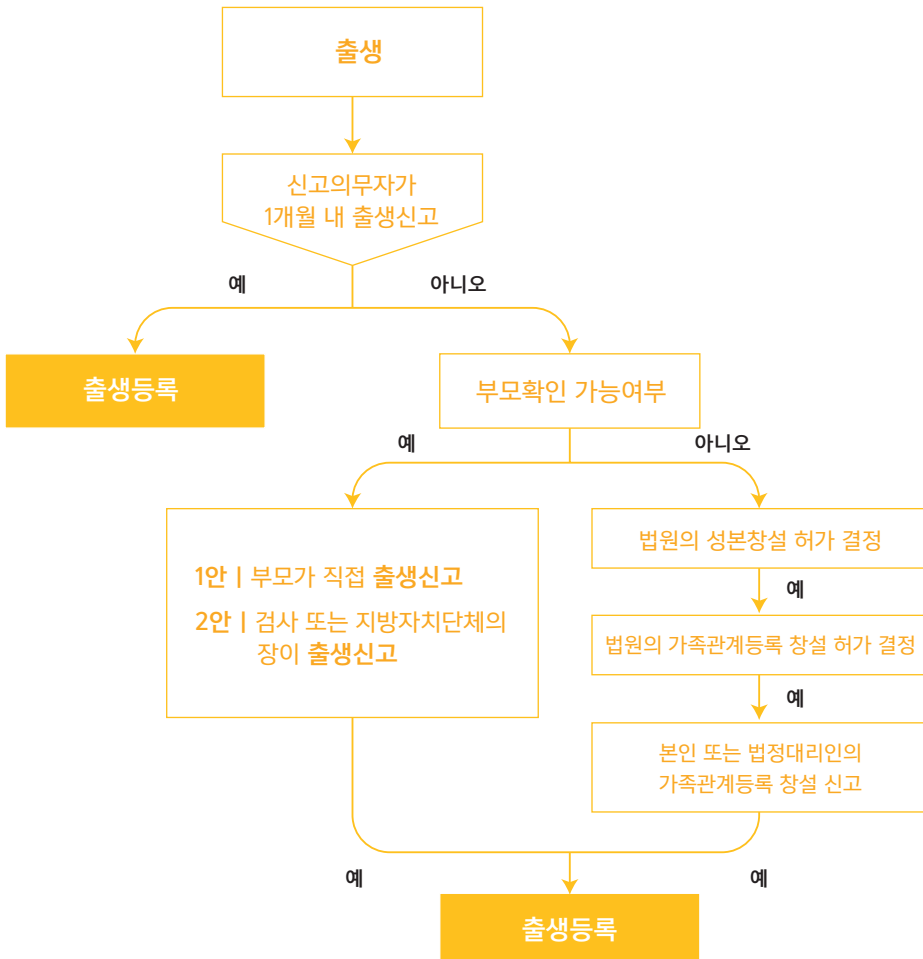
Part 2. 출생등록 절차

국내에서 출생등록은 반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 ① 부 또는 모, 기타 동거하는 친족이나 의사 등 신고의무자의 **출생신고**
- ② 신고의무자가 1개월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
- ③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으면, 법원의 성과 본 창설 허가 결정 및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 결정에 따른 **출생신고**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 또는 가족관계등록창설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처리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사실을 기록(출생등록)하게 됩니다.

출생등록 절차도



I. 부모를 알 수 있는 경우

1.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혼인 중 출생한 아동의 출생등록은 부 또는 모의 출생신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¹⁾ 부모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하는 신고의무자로서, 출생신고서에 아동의 이름 및 등록기준지, 출생 연월일시 및 장소, 부모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아동의 출생지(주민등록을 할 지역) 관할 읍·면·동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²⁾ 출생신고는 아동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³⁾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⁴⁾

제출 서류⁵⁾

▶ 출생신고서[서식 1]

▶ 출생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이하 ① 에서 ④ 중 하나)

①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서식 2]⁶⁾

출생증명서를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신고서의 사본을 접수한 시(구)·읍·면장(동장 포함)은 신고인에게 출생증명서 원본을 제시하도록 하여 그 내용이 일치하는지 대조 및 확인하고, 틀림이 없는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사본의 적당한 여백에 인증문(“위 사본은 출생증명서 원본과 틀림없음을 인증합니다.”)과 그 직명, 성명을 기재한 다음 직인을 찍어야 합니다.

② 출생사실 증명서면[서식 3]⁷⁾

의사나 조산사가 아닌 사람이 분만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분만에 직접 관여한 사람에게 출생사실 증명서면을 작성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단, 모의 진료기록 사본, 자의 진료기록 사본, 예방접종 증명서 등 “친모가 아동을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③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⁸⁾

- 통일부장관이 발행한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
- 외국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출생신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④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서⁹⁾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제1항

2) 「가족관계등록법」 제3조, 제21조, 제44조제2항 및 제4항, 제45조제1항

3)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제1항

4) 「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

5)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6)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제4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 「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생증명서 등에 관한 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20호

7)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제4항제1호, 「가족관계등록규칙」 제38조의2제1항, 「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생증명서 등에 관한 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20호

8)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제4항제2호, 「가족관계등록규칙」 제38조의2제2항

9)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의2, 「가족관계등록규칙」 제87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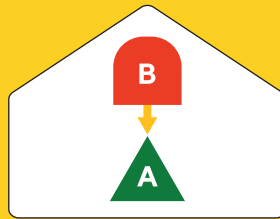
-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출 생략)
- ▶ 아동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출 생략)
 -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인 경우 모의 기본증명서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증명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 아동의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 부 또는 모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대한민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여권, 주민등록등본 및 그 밖의 증명서) 사본
- ▶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 ▶ 출생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고인이 직접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대신 출석한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신고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하는 출생신고 의무자 또는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생확인 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 증명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할 자료, 모의 인적사항을 소명할 자료, 혈연관계를 소명할 자료,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 출생확인 결정이 있으면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출생한 아동의 모가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에는, 그 모가 결혼한 사람이 아님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Q&A <아동이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은 경우>



B는 집에서 혼자 아동 A를 출산하였습니다.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B는 병원에서 출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생증명서를 작성해줄 의사나 조산사가 없고 출생을 증명하는 서면을 작성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B가 A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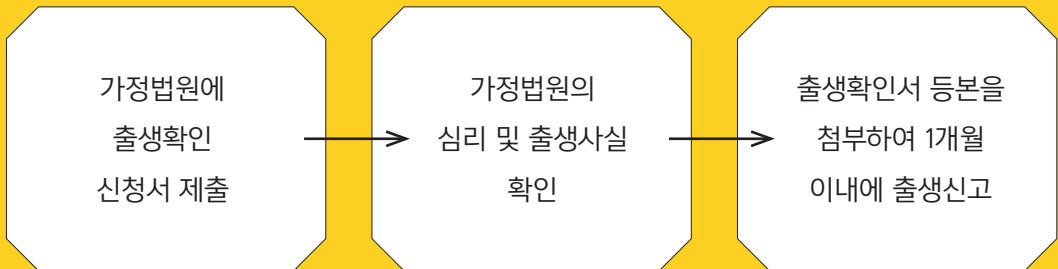
- 1) 모(母)가 병원이 아닌 곳에서 자녀를 출산하여 의사나 조산사 또는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지방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아야 합니다.¹⁰⁾
- 2) B가 가정법원에 출생확인 신청서[서식 4]를 제출할 때에는,
 - ①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병원의 폐업, 보존기간 만료 관련 서류, 병원에 가지 못한 사유서 등)

10)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의2

- ② 모(母)인 B의 성명·출생연월일·등록기준지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기본증명서)
- ③ A와 B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유전자 검사 자료, 친생자관계존재 확인판결 등)
- ④ 신청인(B)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3) 가정법원은 B가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인지, A와 B사이에 혈연 관계가 있는지를 심리한 후 A의 출생확인서를 발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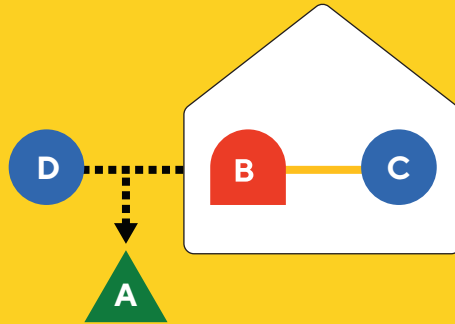
4) B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A의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친생자추정의 문제

출생신고에 모의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는, 모의 혼인 상태에 따라 아동의 친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모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태어난 아동은 그 배우자의 자녀(이하 '친생자')로 추정되며,¹¹⁾ 부(법률상 배우자) 또는 모가 출생신고 의무자입니다.¹²⁾ 반면 혼인 외 출생한 경우(예를 들어, 모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¹³⁾ 생부(生父)는 혼인 외 자녀에 대해 「출생신고에 의한 인지」를 할 수 있는데,¹⁴⁾ 이는 혼인 외 자녀가 다른 사람과 사이에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유전자 검사에 의해 본인의 자녀가 맞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다른 사람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경우라면 출생신고에 의한 인지를 할 수 없습니다.

Q&A <법률상 배우자의 친생자 추정>



B는 법률상 배우자인 C가 아닌 D와의 관계에서 A를 출산하였습니다.

B가 A를 출생신고 할 경우 A는 법률상 C의 친생자가 됩니다.

이에 B는 A의 출생신고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친아버지 D가 자녀인 A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 1) A는 혼인 중 출생자로서, A의 출생신고는 모(母) B 또는 법률상 아버지로 추정되는 C가 해야합니다.
- 2) 만약 D가 A의 법률상 아버지로 인정받으려 한다면, A의 출생신고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후 A와 C의 친생자 추정을 배제하는 법적절차가 필요합니다. 즉, 부부관계에 있는 B 또는 C가 다른 일방(배우자) 또는 자녀 A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¹⁵⁾ 다만 C가 수감 중이거나 오래 출장을 떠났던 예외적인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를 통해 친자 관계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¹⁶⁾

i) 법률상 부모인 B 또는 C가 출생신고 하는 경우

· 법률상 아버지로 추정된 C가 출생신고를 한 경우라면, 친생부인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면 A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됩니다. 이때에는 모(母) B가 다시 A의 출생신고를 한 이후 D가 인지를 하거나,¹⁷⁾ D가 인지의 효력이 있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¹⁸⁾

· 모(母) B가 출생신고를 한 경우라면, 친생부인 확정판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이 있을 때, A의 기존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되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A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작성합니다. B는 친아버지를 D로 하여 출생의 추후보완신고를 하거나, D가 인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ii) 법률상 부모인 B 또는 C가 출생신고하지 않는 경우

· B와 C가 A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친아버지 D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B나 C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피해아동보호 명령을 통해 출생신고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아동인 A, 변호사 또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가정법원(지방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여 친권자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6동처4 결정 참조).¹⁹⁾

· B와 C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A의 복리를 위협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A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²⁰⁾

·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거나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친아버지 D가 A와의 친생자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친생부인의 소 등의 후속절차가 필요합니다. 즉, B 또는 C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D는 법적으로 A의 아버지로 인정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11) 「민법」 제844조제1항

12)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제1항

13)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제2항

14)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제1항

15) 「민법」 제84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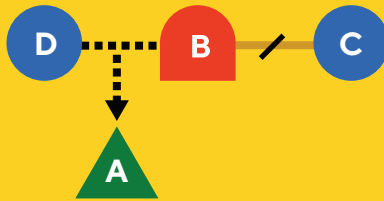
16) 「민법」 제865조

17) 「민법」 제855조제1항

18)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제1항

1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제9호, 법원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청구한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에서 “친권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하여 피해아동들의 출생신고에 있어서 필요한 행위를 승낙한다.”고 결정했습니다.

20)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제4항



B는 C와 이혼한지 100일이 지난 시점에
혼인하지 않은 D와의 관계에서 자녀 A를 임신·출산하였습니다.
친아버지 D가 A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 1) 모(母)인 B가 현재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도, 그 자녀인 A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하였다면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어, 전 남편인 C의 친생자가 됩니다.²¹⁾ 즉, D는 A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2) 다만 모(母)가 이혼 후에 출생한 경우라면, B 또는 C가 가정법원(지방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청구²²⁾를 하거나, 아동의 친아버지 D가 인지의 허가청구²³⁾를 하여 친생부인의 소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친생자 추정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친생부인의 허가청구 및 인지의 허가청구는 아직 A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때 가능합니다.²⁴⁾ 이미 출생신고가 된 경우라면, B 또는 C가 다른 일방 또는 자녀 A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거나,²⁵⁾ 예외적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하여²⁶⁾ C와의 친생자관계를 부인해야 합니다.
- 3) D는 A와 C의 친생자 추정이 배제된 이후, 아버지로써 A를 인지하거나 인지의 효력이 있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1) 「민법」 제844조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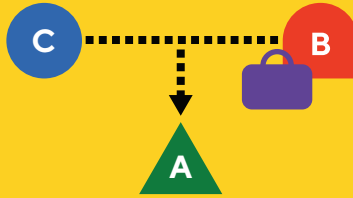
22) 「민법」 제854조의2제3항

23) 「민법」 제855조의2제1항, 제3항

24) 「민법」 제854조의2제1항 단서, 제855조의2제1항 단서

25) 「민법」 제846조, 제847조

26) 「민법」 제865조



B는 C와 동거 중 A를 출산한 직후 바로 가출하여 잠적하였습니다.
친아버지 C가 A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모(母) B의 인적사항을 아는 경우

· 친아버지 C가 B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을 아는 경우라면, C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²⁷⁾ 다만, 모(母)인 B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앞서 설명한 친생부인의 소 등에 따른 절차가 필요합니다.

2) 모(母) B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 친아버지 C가 B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을 전혀 모른다면, C는 자신의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자신과 A가 친생자 관계라는 확인을 받아 인지의 효력이 있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²⁸⁾

·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제2항의 입법취지는 부가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하고 싶으나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후견인 지정 신청, 가족관계등록 창설 및 성본 창설, 인지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부자관계가 확정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가정법원의 간이한 절차를 통해 출생신고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하지 못하여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부가 바로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되어야 합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5브60 결정 참조). 위 판결에서 법원은 아동의 친아버지가 모(母)의 성명만 알고 있던 경우,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임을 확인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27)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제1항

28)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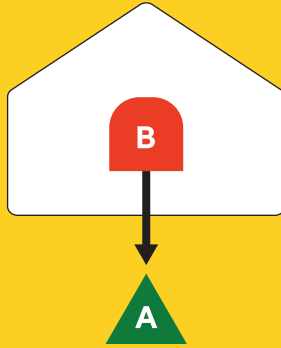
2.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은 행정시스템 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교육, 의료보험, 사회복지 등 다양한 공적체계에서 배제됩니다. 즉,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아동학대로서 아동의 복리가 위태로운 상태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신고의무자인 부모가 아동의 출생을 신고하지 않아 아동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태어난 즉시 등록될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책무를 부담하며, 이에 따라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 공적 기관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즉, 수사 중 아동의 출생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발견한 검사, 아동복지시설·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고 또는 점검 중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을 발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출생신고 절차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절차와 동일합니다. 출생신고서와 함께 의사나 조산사 또는 출산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나 출생사실 증명서면 또는 법원의 출생확인서를 첨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B는 집에서 혼자 A를 출산하였는데,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A를 건물 밖에 두고 도망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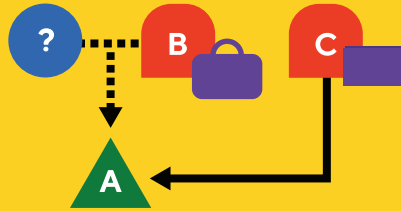
다행히 A는 지나던 행인에 의해 몇 시간 안에 발견되었고,
현재 아동일시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입니다.

영아유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B는 출생신고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A의 출생신고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1) 모(母) B가 A의 출생신고를 할 의사가 없다면, 신고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²⁹⁾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A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2) 이때, A는 병원이 아닌 곳에서 출생하여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하는 출생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거나, 가정법원의 수검명령을 받아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B의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는 직접 유전자 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출생확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3)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이 있으면,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달 이내에 A의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29)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제4항



모(母) B는 친구 C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A를 출산하여,
병원에서 친구 C가 A를 출산한 것으로 출생증명서를 허위로 발급 받았습니다.
친구 C는 미숙아로 태어난 A가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했으나,
A를 양육하던 모(母) B가 몇 개월 후 A만 남겨두고 사라졌습니다.
혼자 A를 부양할 수 없었던 친구 C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았고, 결국 A의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되었습니다.
이후 A를 보호하던 아동양육시설의 의뢰로 경찰은 모(母) B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B는 출생신고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A의 출생신고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 모(母) B가 A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 B가 A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이 필요합니다. A를 출산할 당시 병원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는 친구 C가 모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모 B와 A의 혈연관계를 소명하기 위한 유전자검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 다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제1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호에 따르면, 아동인 A가 유전자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A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시설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하거나, 출생확인 및 유전자검사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유전자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모 B는 유전자 검사결과를 토대로 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아 A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모(母) B가 A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B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자녀 A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의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한 A의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후견인 지정 또는 특별대리인 선임, 유전자 검사 및 가정법원의 출생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II.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는데,³⁰⁾ 출생신고의 경우 성(姓)을 따르기로 한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가 자녀의 등록기준지가 됩니다.³¹⁾ 그러므로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새롭게 등록기준지를 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출생사실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기아인 경우

기아(棄兒)란 부모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아동을 말합니다 일반인이 아동을 발견하여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경우, 경찰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을 직접 발견한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³²⁾ 일반인이 아동을 발견하여 신고하거나 경찰이 아동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찰이 시·읍·면의 장에게 기아발견통보를 해야 하고, 시·읍·면의 장이 기아발견조서[서식 5]를 작성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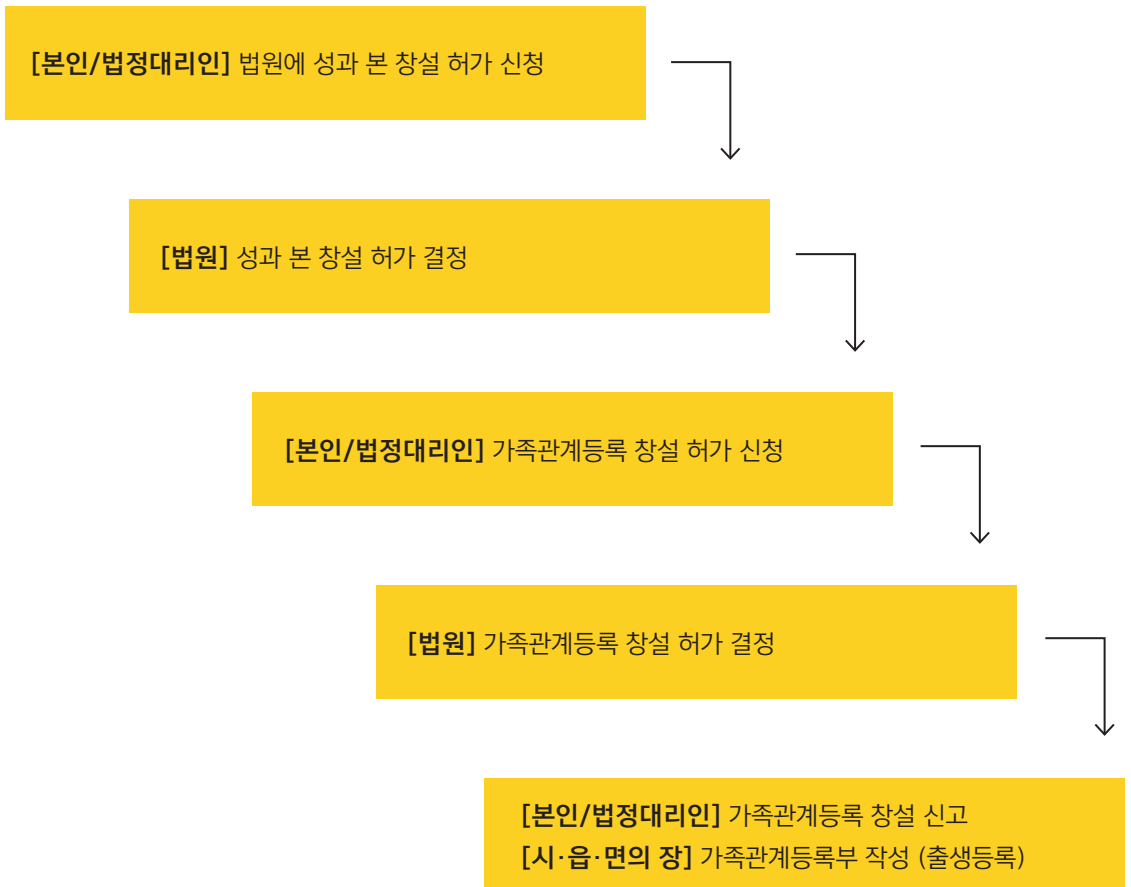
30) 「가족관계등록법」 제10조

31) 「가족관계등록규칙」 제4조

32) 「가족관계등록법」 제52조, 「기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3호

2. 기아가 아닌 경우

부모가 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동을 시설에 맡긴 부모가 연락처를 잘못 남겼거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연락이 두절되어 부모의 존재 이외에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출생자의 인적정보(성명, 본, 성별 및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등)뿐 아니라 부모의 인적정보(부·모의 각 성명, 본,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및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즉, 국내법상 출생신고는 부모의 구체적인 인정정보를 필요로 하며, 부모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새롭게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³³⁾



33) 「민법」 제781조제4항,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 및 가족관계등록창설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7호

· 성과 본 창설허가 신청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는데,³⁴⁾ 기아(棄兒)와 같이 부모를 알 수 없거나 그 이외의 부모를 알 수 없는 고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해야 합니다. 즉, 출생신고 의무자가 없거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인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후견인, 특별대리인 등)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지방법원 및 지원)에 성과 본의 창설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서식6].³⁵⁾

제출 서류

▶ 주민등록신고확인서[서식 10]

-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주민등록신고서[서식 9]'를 제출하여, 읍·면·동의 장이 발행하는 '주민등록신고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 증명서를 받을 때 1부 제출해야 하고,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에도 1부가 필요하므로, 미리 3부 이상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서식 8]

-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려는 곳의 시(구)·읍·면사무소에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 신청서 [서식 7]를 제출한 후,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중복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14일의 공고 기간을 거친 뒤,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에서도 1부가 필요하므로 미리 2부 이상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아동의 반명함판 사진

▶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서식 13]

- 각 인우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및 그 밖의 소명서류

-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라면, 성과 본 창설허가 신청을 위한 대리권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34) 「가족관계등록법」 제10조제1항

35) 「기아 아닌 고아 등에 대한 성과 본의 창설절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5호

·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신청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고자 할 때에는 법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본의 창설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³⁶⁾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에 대한 관할법원은 등록부를 창설하고자 하는 사람이 등록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며,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스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³⁷⁾ 다만, 언어적 의사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와 같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 가족관계등록신분표[서식 11]
- ▶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서식 8]
- ▶ 주민등록신고확인서[서식 10]
- ▶ 성과 본 창설허가 결정 정보
- ▶ 성장환경진술서 및 성장과정을 뒷받침하는 소명자료³⁸⁾

1. 성장환경 진술서에는 출생지, 성장지, 성장과정 및 그 밖의 성장환경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2. 출생지는 지번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구역 명칭은 기재하되 지번의 기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성장지는 가능한 한 시기별, 나이대별(1-7세, 8세-13세까지 등)로 특정하여 기재합니다.
4. 성장과정에는 위 3항과 같이 각 시기마다 주거, 생계수단, 교육관계, 동거인, 후견인 등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기재합니다.
5. 이 진술서는 출생자 본인이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자가 기명 또는 서명날인을 합니다.

36) 「기아 아닌 고아 등에 대한 성·본의 창설절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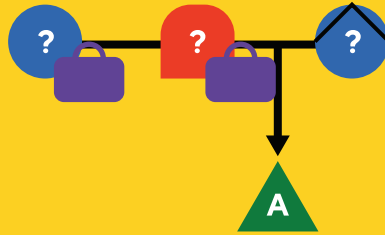
37) 「가족관계등록법」 제101조, 「가족관계등록규칙」 제87조제1항제3호, 제2항

38)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 및 가족관계등록창설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7호 별지 제1호

·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가정법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서식12].³⁹⁾

Q&A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의 후견인 선임의 경우>



A(만 2세)는 **법인에서 설치·운영하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A의 아버지는 A의 출생 전에 사망했고, 어머니는 출생 직후 재혼을 한 뒤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A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1) A와 같이 부모의 존재 이외에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A의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성과 본 창설 절차와 가족관계등록 창설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성과 본 창설허가 및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와 같은 A의 재판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등록창설은 미성년자도 할 수 있으나,⁴⁰⁾ 아직 2세인 A는 언어적 표현능력이 제한적인 영유아로서 의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A는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인 어머니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로서 후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i) 부모의 존재가 확인되는 경우

· 부모의 존재가 단서로 남아있는 A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상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A는 **법인에서 설치·운영하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인으로 될 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된 자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인이 됩니다.⁴¹⁾ 후견인이 결정된 때에는 보호시설의 장은 후견인 지정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고문을 제출하여 부양의무자 확인의 공고를 의뢰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5일 동안 공고하여야 합니다.⁴²⁾

39) 「가족관계등록법」 제101조제1항,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 제2항

ii) 부모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

· 만약 A가 유기되어 친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라면, A는 ‘고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① A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그 보호시설의 장이 A의 후견인이 됩니다(제3조제1항). ② A가 그 외의 민간 보호시설에 있는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인(시설장이 아닌 사람도 가능)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3조제2항).⁴³⁾

고아 아닌 미성년자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운영하는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되려는 경우

후견인 지정신청

·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후견인 지정신청서’ 제출
· 첨부서류: 아동의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 지방자치단체장의 후견인 지정 결정 및 ‘후견인 지정서’ 수령

법원의 후견인 지정 허가 신청

· 보호시설 소재지 관할 법원에 후견인 지정 허가 신청
· 첨부서류: 후견인 지정서, 아동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 후견인 지정을 받은 날 또는 법원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문 제출
· 15일 동안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후 후견인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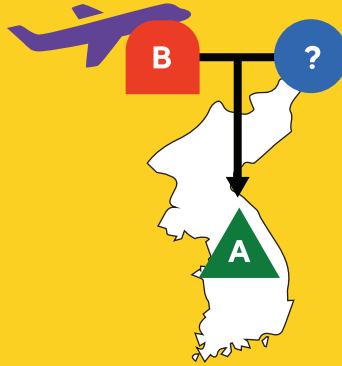
3) A의 법정대리인으로 선임된 후견인은 법원에 대한 성과 본 창설허가 및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를 신청하고,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결정 등본을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창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서식 12]. 이때 비로소 A의 출생사실이 공적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40) 「가족관계등록법」 제101조, 「가족관계등록규칙」 제87조제1항제3호, 제2항

41)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42)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43)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항



A는 대한민국에 있는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는 알 수 없고,
어머니 B는 병원기록에 남아있는 이름을 보았을 때 외국인으로 추측됩니다.
출산 당시 B는 1년 전 이혼 후, 재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모 B는 A를 출산한 병원에서 이름 외에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A는 대한민국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1) 기아(棄兒)인 경우

· 「국적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친부모의 존재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기아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성과 본을 창설할 수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사실이 기록됩니다.

· 본 사례처럼 의료기록상 남겨진 모의 이름이 ‘외국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모를 특정할 수가 없으므로, A는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부모를 알 수 없는 고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는 법원의 성과 본 창설허가(대구가정법원 2018. 11. 14. 선고 2018느단2042 판결) 및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를 받아 출생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2) 부모를 찾았는데,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에 태어난 경우

· 만약 경찰 수사 결과 모는 외국인이며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아버지는 한국인이었다면, 아버지가 A를 인지(認知)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는 인지에 의한 국적을 취득한 후, 출생사유가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⁴⁴⁾

3) 부모를 찾았는데, 부모 모두 외국인인 경우

· 만약 부모 모두가 외국 국적인 것이 확인된 이주배경 아동은 「국적법」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출생신고를 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 제도가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⁴⁵⁾ 이러한 경우에는 부모의 국적국 재외공관(대사관 등)을 통해 출생신고를 해야 하지만 국가마다 요건과 절차가 다르고, 국내에 대사관이 없거나, 대사관을 통해 출생신고를 받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 이때, 부모는 현재 거주하는 시(구)·읍·면사무소에 자녀의 출생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의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없는 신고서류’로서 아동의 출생사실 신고서류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합니다.⁴⁶⁾ 아동과 아동의 부모는 출생신고를 수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수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⁴⁷⁾ 다만, 수리증명서가 아동의 출생과 존재를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 내용은 출생신고 접수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증이므로 아동의 출생과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44) 「국적법」 제3조,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9호

45) 「가족관계등록법」 제1조

46) 「가족관계등록규칙」 제69조

47) 「가족관계등록규칙」 별지 제7호 서식

나는 작명가가 아닙니다

1

어쩔 수 없잖아요
옷 주머니 속 다 뒤져 봐도 쪽지 한 장 없었어요
선생님 반 배정이니 이름 좀 지어 봐요

뇌성마비 그 애 곁에
그래도 살아야 한다고 미숫가루 한 통
다시 불일 없다는 듯
낙엽 몇 장
발바닥을 털고 있었다

그날부터 그 애 이름은 시몬

머지않아 낙엽이란 낙엽 다 떨어져 가루가 된 가을 속으로 들어갔다

2

그 애 이름은 국화

누런 콧물이 흘러내려도 닦아 달라고 말도 못 하던
그 애가 좋아하는 꽃은 국화
그래서 그 애 이름은 국화

반 아이들과 산책에서 돌아올 때
흐드러진 야생화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사이
처음 본 듯 들국화 한 다발 들고 있던 그 애

수위에 국화 몇 송이 덧입혀 주었다

들국화 싱긋 웃던 날

선생님, 노을이 예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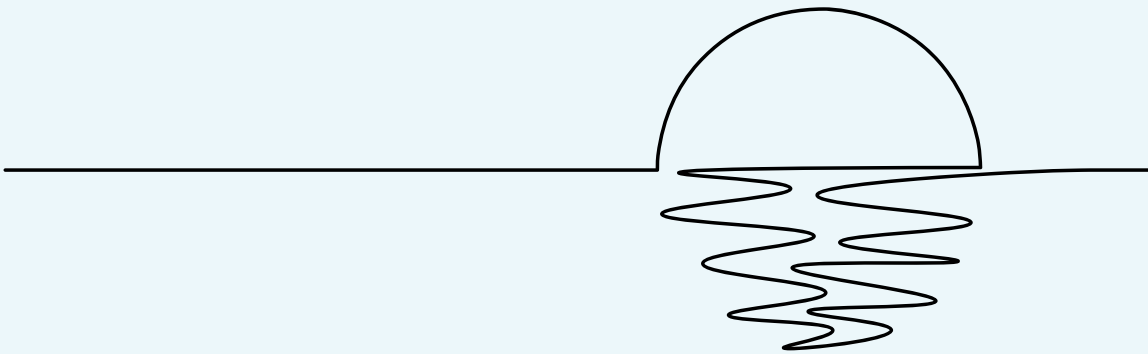
하천 너머 불빛도 예쁘구나

처음 올 때부터 이름을 손에 쥐고 온 너는 민수

울타리 앞에서 고요히 노을이 되어 가던 민수

방금 도착한 노을이

오늘은 손톱에 피가 나도록 네 이름을 쓰고 간다



· 출생통보제 도입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및 뉴질랜드 등 외국에서는 병원이 직접 아동의 출생사실을 등록관서에 통보하는 사례를 다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생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태어난 한 사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가 남아있게 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99.6%가 병원에서 출생한 것으로 확인되며, 병원 외의 장소에서 출생한 아동은 1,540명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아동이 병원에서 태어나는 현실에서 병원이 대법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의 출생을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한다면, 최소한 병원에서 태어난 99%의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8년에는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019년 1월 기준 77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은 기존의 전산망을 활용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아동의 인적사항 일부를 전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이 정보를 전송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확대한다면 모든 병원이 아동의 출생사실을 공적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도 실현가능한 기술입니다.

· 출생증명서 공적 데이터화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은 국가에서 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도 공적장부가 작성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동이 세상에 태어났음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서류가 출생증명서입니다. 출생증명서는 아동이 태어난 사실과 아동의 친모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기능을 합니다. 늦게나마 출생신고를 하고자 할 때,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어 출생신고를 새롭게 해야 하는 경우에도 출생증명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기록이 폐기되었거나 병원이 폐원하는 경우, 태어난 병원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출생증명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친부모를 찾아 유전자검사를 통해 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거나, 인지청구 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친부모를 찾지 못한다면 친부모와의 관계는 물론 아동이 출생하여 존재한다는 사실부터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서 언급된 온라인 출생신고와 더불어 아동의 출생증명서가 공적으로 관리된다면, 태어난 즉시 등록될 아동의 권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출생등록 관련 정책조정 및 통합관리 체계 구축

아동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부서는 유기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견된 경우, 해당 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조치하고, 주민등록이 없는 때에는 사회보장 관리번호를 부여합니다. 이후 출생등록을 위한 사후조치(신고의무자의 출생신고, 가족관계등록창설 등)는 더 이상 아동 보호 업무 담당부서의 역할이 아닙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별도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출생등록이 안 된 아동의 존재 사실을 담당부서에 알리는 것만으로도 출생등록 절차는 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보호’가 ‘아동권리 보장’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칸막이 행정을 넘어 통합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한편, 가족관계를 관리하는 대법원,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외국인의 체류를 관리하는 법무부,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실제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각급 지방자치단체까지 출생등록에는 다양한 기관과 부서가 관여합니다. 하지만 이들 기관 사이에서 주무관청도 불분명하고, 통합관리를 위한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책임을 떠넘기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출생등록에 대한 정책조정은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정부의 책무 이행입니다.

· 보편적 출생등록의 필요성

앞서 제시한 다양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출생등록 제도는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보장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부모 등이 고의나 과실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아동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우연히 발견된 경우에도 성·본 창설과 가족관계등록창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고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국적을 이유로 출생등록 제도에서 배제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모든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 될 권리가 있으며, 이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시작점입니다. 출생등록될 권리는 성별, 국적, 인종, 장애, 사회적 지위 및 경제상황을 불문하고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입니다. 모든 아동이 세상에 존재하는 즉시, 그 존엄함을 인정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관련 서식 및 예규

관련 서식

[서식1] 출생신고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3호] 양식 제1호)

출생신고서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출생자	성명	*한글	(성) / (명)	본 (한자)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 <input type="checkbox"/> 혼인중의 출생자	
		한자	(성) / (명)			<input type="checkbox"/> 여	* <input type="checkbox"/> 혼인외의 출생자	
	*출생일시		년 월 일 시 분(출생지 시각: 24시각제)					
	*출생장소		<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병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의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② 부모	부	성명	(한자:)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모	성명	(한자:)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부의 등록기준지							
	*모의 등록기준지							
혼인신고서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하였습니까?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③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 등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후 다시 출생신고하는 경우								
폐쇄등록부상 특정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④ 기타사항								
⑤ 신고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격		<input type="checkbox"/> 부 <input type="checkbox"/> 모 <input type="checkbox"/> 동거친족 <input type="checkbox"/> 기타(자격:)					
	주소							
	*전화				이메일			
⑥ 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및 출생자 부모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인 구 동 향 조 사

㉗ 최종 졸업학교	부	① 학력 없음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⑥ 대학원 이상
	모	① 학력 없음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⑥ 대학원 이상

※아래 사항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읍면동접수	가족관계등록관서 송부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및 처리
	*주민등록번호	
	년 월 일(인)	

작 성 방 법

※ 등록기준지: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의 것(인명용 한자)으로, 이름자는 5자(성은 포함 안 됨)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사용가능한 인명용한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생일시는 24시각제로 기재합니다. (예: 오후 2시 30분 → 14시 30분)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현지 출생시각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재하되, 서머타임 실시기간 중 출생하였다면 그 출생지 시각 옆에 “(서머타임 적용)”이라고 표시합니다.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을 기재합니다.

출생장소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시·구의 ‘동’, 읍·면의 ‘리’) 또는 도로명주소의 ‘도로명’까지만 기재하여도 됩니다.

②란: 부(父)에 관한 사항-혼인의 출생자를 모(母)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으며, 전혼 해소 후 100일 이내에 재혼한 여자가 재혼성립 후 200일 이후, 직전 혼인의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하여 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의 성명란에 “부미정”으로 기재합니다.

③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 친생부인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후 다시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④란: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선순위자(부모)가 신고를 못하는 객관적인 이유(예: 부모 사망, 행방불명 등)

- 출생 전에 태아인지 한 사실 및 태아인지 신고한 관서

-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현지 출생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하여 정하여지는 출생일시를 기재합니다.

그 현지 출생시각이 서머타임이 적용된 시각인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실을 기재합니다.

- 외국인인 부(父)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외국의 등록관서에 등재되어 있으나 한국식 이름으로 출생신고 하는 경우: 외국에서 신고된 성명

⑥란: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㉗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첨부서류

1. 출생증명서 등 1통(다음 중 하나).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 의사나 조산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분만에 직접 참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1호 별지 서식)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외국어의 경우 번역문 첨부)

-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 아래 2항 및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2. 출생자의 부(父) 또는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 부(父)가 혼인외의 자를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 출생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모가 유부녀(有夫女)가 아님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 보증서.

3. 자녀의 출생 당시 모(母)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모의 기본증명서) 1통(1998. 6. 14. 이후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4. 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父) 또는 모(母)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

부(父) 또는 모(母)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 1부(예: 여권, 주민등록등본, 그 밖의 증명서).

5.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

6.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6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출생증명서							
출생아의 부모	부	성명		연령	만 세 (년 월 일생)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재	직업	
	모	성명		연령	만 세 (년 월 일생)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재	직업	
산모의 주소							
출생 장소							
① 자가 ② 병원 ③ 의원 ④ 모자보건센터 ⑤ 조산원 ⑥ 기타							
출생일시	년 월 일 시 분 (24시간제에 따름)			출생아	성별	남 · 여 · 불상	
임신기간	주				성명		
다태(多胎)	① 2 태 ② 3 태 ③ 태	다태아(多胎兒) 출산 중의 해당 출생아의 출산 순위		① 제1아 ② 제2아 ③ 제3아 ④ 제4아			
		다태아 출산 중의 태아의 상태		출생 명(남 명, 여 명) 사산 태(남태, 여태, 불상)			
산모의 산아 수	명 중 생존자 명, 사망자 명, 사산자 태						
출생아의 신체 상황				몸무게	□.□□kg		
출생아의 건강 상황							
<p>「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년 월 일</p> <p>의료기관 주소: 명칭: 면허번호 제 호 조산(의사, 한의사, 조산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제 호 조산(의사, 한의사, 조산사) 성명 (서명 또는 인)</p> <p>* 유의사항: 출생신고는 1개월 이내에 주소지의 구청·시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하며, 지연 신고 및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p>							

[서식 3] 출생사실 증명서면 (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생증명서 등에 관한 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20호] 별지 서식)

출생사실 증명서면

장 귀하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①출생자	성 명		성별	
	출생연월일	년 월 일	출생장소	
②출생자 (쌍태아이상 인경우에만 기재함)	성 명		성별	
	출생연월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생순위	
	출생장소			
	성 명		성별	
	출생연월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생순위	
	출생장소			
③부(父)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④모(母)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⑤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첨부서류: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의 주민등록증 등 사본 1부.

※ 주의사항: 허위로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허위의 출생신고를 돕는 사람은 형법 제228조제1항 공증증서원본부실기재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 작성방법

1. ②란은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 ①란에 이어서 출생한 순서대로 기재한다.
2.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①란 중의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한다.
3.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의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포함한다)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기 관 명

기아발견조서

통보자	성 명	
	주 소	
통 보 연 월 일		년 월 일
등 록 기 준 지		
주 소		
등록기준지를 정한 연월일		년 월 일
성명 및 성별		
출생추정연월일		
발견장소 및 일시		
소 지 품		
기 타 상 황		

위와 같이 기아발견조서를 작성합니다.

20 . . .
○○시(구) · 읍 · 면장 ○ ○ ○

직인

- (주의) 1. 통보자가 경찰관일 때에는 소속기관 및 직위를 기재합니다.
 2. 기아발견통보서를 첨부합니다.
 3. 기타사항란은 기아발견당시에 발견장소 및 일시, 소지품 이외에 기아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4. 기아발견조서는 출생신고에 준하여 통계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성·본창설 허가 신청

주 소:

신청인 시(구)·읍·면장 ○ ○ ○

사건본인 기아(남, 여) ○ ○ ○

(추정) 년 월 일생

신 청 취 지

기아 ○○○의 성을 「○」로 본을 「○○」로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신청취지에 알맞게 기재한다.)

첨 부 서 류

1. 기아발견조서등본 1통. 끝.

년 월 일

위 신청인 시(구)·읍·면장 ○○○○

직인

○○○○법원 귀중

[서식 7]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 신청서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 및 가족관계등록창설절차에 관한 사무 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7호] 별지 제2호 서식)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 신청서

성·본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을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을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자		등록기준지	성 별	생년월일	비고
주 소	성 명				

※ 첨부서류

주민등록신고확인서 1부. 끝.

서기 20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 ○ 시(구)·읍·면장 귀 하

[서식 8]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 증명서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 및 가족관계등록창설절차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7호] 별지 제3호 서식)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 증명서

등록기준지: 없음

주 소: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상기자는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서기 20 년 월

○○ 시(구)·읍·면장 ○○○

직인

주민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 번호	신고일 년 월 일	등록기준지 통보 (인)
세대주 정보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주민등록신고 대상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한자)	성별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국내거소 신고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기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 세대주와 신고인이 같으면, '신고인'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11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세대주)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사람(신고인)과의 관계

첨부 서류	영주귀국 확인서(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주민등록신고 확인서

* 확인서는 전산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전산으로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작성해 교부합니다.

접수 번호	신고일
신고인	성명
	주소
세대주	

위와 같이 주민등록 신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직인

주민등록신고 확인서

등록기준지		주민등록 신고서 대 조	(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신고년월일			
<p>위와 같이 주소지에서 주민등록신고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2000 년 0 월 0 일</p> <p>00 시 00 구 00 동 장 (인)</p>					

가족관계등록신분표 (1)

1. 기본사항

등록기준지	시	구	동	번지
-------	---	---	---	----

가족관계등록부사항

구분	상 세 내 용

특정등록사항

구분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본인	김본인(金本人)	년 월 일	-	남	金海

일반등록사항

구분	상 세 내 용
출생	【출생장소】 시 구 동 번지

구분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부	김일남(金一男)	년 월 일	-	남	金海
모	이일녀(李一女)	년 월 일	-	여	全州

2. 가족관계사항 작성시 유의사항

1.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고아인 경우에는 2. 가족관계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2. 혼인중의 자(또는 혼인외 자)로서 출생신고의무자가 없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의 가족관계등록창설은 기본사항과 가족관계사항에 위와 같은 형태로 기재하여 신분표를 작성한다. 다만 혼인외의 자는 모에 관한 특정등록사항(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만을 기재한다.
3. 위의 형태는 예시에 불과하므로 신분에 관한 사항은 사실에 따라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서식 12]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3호] 양식 제29호)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서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가족 관계 등록 창설자	본인 성명	한글	(성) / (명)	본 (한자)	성 별	☐남 ☑여		
		한자	(성) /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출 생 연 월 일			
	등록기준지							
	주 소							
	부 모	부(父)	성명	(성) / (명)	등 록 기 준 지			
			주 민 등 록 번 호	-				
모(母) 모(母)		성명	(성) / (명)	등 록 기 준 지				
				주 민 등 록 번 호	-			
②신분에 관한 사항								
③허가 또는 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④기타사항								
⑤ 신고인	성 명	(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기타(자격 :)						
	주 소				전화		이메일	
⑥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성 방법	
<p>*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p> <p>①란: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는 원칙적으로 사건본인 각자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와 함께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p> <p>: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 생략할 수 있습니다.</p> <p>②란:이 신고서에서 정한 이외의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로 첨부한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결정서(신분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p> <p>④란: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p> <p>⑥란: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p> <p>[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p>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결정 등본 1부(확정판결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를 할 경우에는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2.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2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인 우 보 증 서

사건본인 : 이 름 (주민등록번호, 없으면 생략)

주 소 :

등록기준지 :

보증사항 (보증내용을 상세히 기재)

위의 사실이 틀림이 없으며 만일 후일에 본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있을 때에는 보증인 등이 법적 책임을 지겠기에 이에 보증함.

년 월 일

보 증 인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등록기준지 :

보 증 인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등록기준지 :

※ 유의사항 : 보증인들의 인감증명을 첨부요망

관련 예규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2호, 시행 2015. 2. 1.]

제1조 (「동거하는 친족」의 의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제3항의「동거하는 친족」이란 출생 당시에 출생자와 동거하는 친족을 말한다. 여기에서 “동거”란 일상생활관계에 있어서 가족적인 상태에 이르렀음을 말하며, 단순히 일시적으로 동일 가옥 내에서 거주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은 동거자라 할 수 없다.

제2조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할 경우)

법 제46조의 신고의무자 중 후순위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를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 (신고인의 대리인이 말로 신고한 경우의 신고인 표시방법)

법 제31조에 따라 대리인이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신고인에 대한 기재례를「【신고인】부 대리인 ○○○」로 한다.

제4조 (착오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하는 출생신고)

신고 착오로 인하여 생존자를 사망자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신고의무자로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생존자를 사망자로 기록 처리한 시(구)·읍·면에서 본인에 대하여 등록부정정의 최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중혼 중의 출생자의 출생신고)

중혼은 취소원인이나 그 취소의 효력은 이전으로 소급하지 아니하므로, 중혼으로 취소할 수 있는 혼인 당사자 사이에서의 출생한 자녀는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 (부가 혼인 전의 출생자를 혼인 후에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할 때의 처리)

부가 혼인 전의 출생자를 혼인 후에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법 제57조에 따라 인지신고의 효력과 부모의 혼인에 의한 혼인 중의 자의 신분취득의 효력이 동시에 있으므로 이를 수리

하여야 한다.

제7조 (혼인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방법)

혼인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다른 남자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제8조 (부의 혼인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시 주의사항)

- ① 부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구)·읍·면·동·재외공관의 장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에 그 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에게 배우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공증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의 보증서를 제출케 하여야 한다.

제9조 (출생자의 성명 중 이름이 “미정”으로 신고된 경우의 처리방법)

- ① 법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에 있어 출생자의 성명 중 이름을 “미정”으로 신고 된 경우도 이를 수리하여 처리한다.
- ② 각 기록에 대한 조치는 추후 신고의무자의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신고서의 기재방법 및 등록사항별증명서의 기재례
 1. 출생신고서의 출생자 성명란에 “명미정”이라 기재하고 기타란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다.
 2. 등록사항별증명서의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제10조 (부 미정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의 처리)

부 미정의 출생신고란, 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 부의 추정이 경합된 경우이므로, 여자가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100일 내에 재혼하였고, 재혼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전혼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자녀가 출생하여, 부 미정의 출생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부가 확정될 때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는 신고로 보아 이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두었다가, 부를 정하는 판결의 확정 후,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부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 그 자녀의 출생신고의 처리방법)

- ① 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등

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예 : 여권, 주민 등록등본, 그 밖의 증명서 등)로 부 또는 모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소명하고 부모가 혼인관계에 있다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혼인증서)를 첨부하여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면 그 자녀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혼인외 자인 경우에는 부가 태아인지신고를 한 경우에만 그 자녀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② 부모를 알 수 없는 때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하며(「민법」제781조 참조), 부모를 알 수 없어 성과 본을 창설하는 허가심판청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청구인(본인)의 나이가 만15세 이상인 경우는 가급적 가족관계등록창설의 경우에 준하여 신원조사를 하도록 한다.

의사능력 없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변경신고 ·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9호, 시행 2008. 1. 1.]

사건본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등록기준지변경신고 ·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을 하고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의 재판이 있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또한 신고의무자가 된다.

사건본인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의 신고인

개정 2013. 6. 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80호, 시행 2013. 7. 1.]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6조는 보고적 신고에 관한 규정이고, 같은 법 제27조는 창설적 신고에 관한 것인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물론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 보고적 신고는 미성년자(의사능력이 있는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신고하여도 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생증명서 등에 관한 처리지침

개정 2018. 4. 3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20호, 시행 2018. 5. 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4항에 따라 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생증명서 등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출생증명서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8조에 정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그러나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는 「의료법 시행규칙」제11조가 규정하는 서식 이외에 보건복지부가 정한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이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8조에 정한 기재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때에도 출생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3. 의사나 조산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법 제4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작성하는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은 별지 서식에 따르고,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함께 첨부한 때에 출생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4. 출생증명서를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출생신고서에 첨부하여도 된다. 다만 사본이 첨부된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동장을 포함한다)은 신고인으로 하여금

- 아 래 -

위 사본은 출생증명서 원본과 틀림없음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 시(구)·읍·면장 ○○○

직인

그 출생증명서 원본을 제시하도록 하여 그 내용의 부합여부를 대조 및 확인한 후 틀림이 없는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사본의 적당한 여백에 아래와 같이 인증문을 기재하고 그 직명과 성명을 기재한 다음 직인을 찍어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16. 11. 25.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0호, 시행 2016. 11. 30.]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4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87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서의 제출)

-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출생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고,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출생연월일·등록기준지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사건본인의 모와 사건본인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가정법원의 심리)

- ① 가정법원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건본인의 모와 사건본인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사건본인의 출생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출생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경찰관서의 장 등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청인과 사건본인을 심문할 수 있다.
- ④ 가정법원은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3항의 심문에 의하여도 사실관계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참고인 심문을 할 수 있다.
- ⑤ 심문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정법원은 심문을 공개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 (출생의 신고)

법 제44조의2제1항의 출생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으로 출생증명서를 갈음한다.

그 출생증명서 원본을 제시하도록 하여 그 내용의 부합여부를 대조 및 확인한 후 틀림이 없는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사본의 적당한 여백에 아래와 같이 인증문을 기재하고 그 직명과 성명을 기재한 다음 직인을 찍어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15. 10. 23.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82호, 시행 2015. 11. 19.]

제1조 (목적)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7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87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서의 제출)

- ① 법 제57조제2항의 가정법원 확인을 신청하려는 부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고,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신청인과 사건본인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가정법원의 관할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통 또는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가정법원의 심리)

- ① 가정법원은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청인과 사건본인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국가경찰관서 및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청인과 사건본인을 심문할 수 있다.
- ④ 가정법원은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3항의 심문에 의하여도 사실관계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참고인 심문을 할 수 있다.
- ⑤ 심문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정법원은 심문을 공개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 (친생자출생의 신고)

-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으로 출생증명서를 갈음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 출생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출생신고서에 출생장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등록부 정정 신청 등)

① 신고의무자는 법 제57조제4항제1호 또는 규칙 제87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출생신고 및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읍·면의 장은 제1항의 경우에 법 제57조제2항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등록부의 기록과 법 제57조제4항의 출생신고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부정정신청서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 (등록부 정정 방법 등)

① 법 제57조제4항의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법 제57조제2항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 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첨부하게 하고, 출생신고서 양식(「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양식 제1호) 중 “기타사항란”에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출생신고를 한다는 뜻을 기재하게 하여 수리한다.

② 출생신고를 수리한 시·읍·면의 장이 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등록부정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7조제2항에 따라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 후 동일인이 틀림없으면 법 제57조제2항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③ 제2항의 등록부정정신청을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④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게 된 경우, 법 제57조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모에 관한 사항을 추후보완신고에 의해 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다.

기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3호, 시행 2015. 2. 1.]

제1조 (기아발견통보)

- ① 기아(기아)를 발견한 사람 또는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2조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보호시설에 수용된 아동이 부모를 알 수 없고 또한 수용의 동기가 기아였던 경우에는 발견의 시기와 아동의 연령에 불구하고 보호시설의 장의 기아발견통보가 있는 때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법 제 52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조 (기아발견조서의 작성)

- ① 통보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소지품, 발견장소, 발견연월일시, 그 밖의 상황, 성별, 출생의 추정연월일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서를 신고서로 보고 기아발견통보의 서면이 있는 때에는 이를 그 조서에 합철한다.
- ② 시(구)·읍·면의 장이 기아발견 사실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 기아발견조서를 작성하여 문서건명부에 기록하고 성·본의 창설허가를 받을 때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보관한다.

제3조 (기아에 대한 성본의 창설)

- ① 시(구)·읍·면의 장은 기아발견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별지 서식 예에 의한 성·본의 창설허가재판 청구(수수료는 면제)를 하여야 한다.
- ② 기아에 대하여 소지품에 그 성명과 본의 표지가 있는 때에 그 성과 본을 따르더라도 성·본 창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기아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 ①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본의 창설허가 재판서 등본의 송부를 받았을 때에는 문서건명부에 기록하고 보관 중인 기아발견조서에 첨부하여 이 기아발견조서를 신고서로서 접수장에 접수함과 동시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 ② 기아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성명란은 빈칸으로 하고, 성별란에는 남 또는 여로 기록한다.

제5조 (부모가 기아를 찾을 때)

- ①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아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기아발견조서에 따라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첨부하게 하고, 출생신고서 양식(「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양식 제1호) 중 “기타사항란”에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아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기아의 출생신고를 한다는 뜻을 기재하게 하여 수리한다.
- ② 기아의 출생신고를 수리한 시(구)·읍·면의 장이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부정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58조에 따라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 후 동일인이 틀림없으면 기아발견조서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 ③ 제2항의 등록부정정신청을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기아 아닌 고아 등에 대한 성·본의 창설절차

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5호, 시행 2015. 2. 1.]

「민법」제781조제4항의「부모를 알 수 없는 자」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2조가 규정한 기아이거나, 그 이외의 부모를 알 수 없는 고아 등을 말하는데, 기아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시(구)·읍·면장이 관할법원의 성·본창설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기록하고 기아 아닌 고아 등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한다.

1. 성·본의 창설허가신청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에서 후견직무를 행할 사람으로 지정된 사람 및 법원의 선임후견인 등 포함된다)이 가사소송법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지방법원 및 지원)에 신청한다.
2. 신청서에는 대리권(법정대리인 경우)을 증명하는 서면 및 그 밖의 소명서류를 첨부하고, 「가사소송 수수료규칙」에 따라 정해진 인지를 첨부한다.
3. 성·본의 창설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같은 허가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아 시(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를 한다.
4. 위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서를 수리한 시(구)·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되 그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제6호의 등록사항별증명서의 기재례에 따라 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아 아닌 고아 등이 부모를 찾은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4조에 따른 등록 부정정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6. 등록사항별증명서의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 및 가족관계등록창설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08. 6. 1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7호, 시행 2008. 6. 18.]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창설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예규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나 친생부인판결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창설,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2조(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재적자), 기아발견조서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첨부서류)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비송사건절차법」 제9조제1항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려는 곳의 시(구)·읍·면의 장이 발급하는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
2. 읍·면·동의 장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한 주민등록신고확인서
3. 별지1의 성장환경진술서작성방법에 의한 출생지, 성장지, 성장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성장환경 진술서
4. 성장과정을 뒷받침 하는 다음 각 호의 소명자료(이 소명자료에는 작성자의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가. 취학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학적부
 - 나. 유치원, 병원이나 종교단체가 운영 또는 후원하는 시설, 그 밖의 보호 및 위탁시설 등에 입소했던 경우 그 확인서
 - 다. 근로자인 경우 대표자나 감독자의 확인서
5. 성·본창설허가 심판서 등본
6. 그 밖에 법원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 발급)

① 제3조제1호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신청허가신청서에 첨부할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 본인이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신청하려는 곳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별지2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신청하려는 곳을 포함한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 신청서에 기재된 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별지3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사실탐지촉탁)

① 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신청허가신청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유무, 주거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신청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지문조회 등에 의한 사실탐지촉탁을 하여야 한다. 이 촉탁서에는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첨부서류에 나타난 사항 및 장소 등을 중심으로 별지4와 같은 조사항목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실질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신청인이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첨부한 서류의 내용에 보호시설 등에 관한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시설의 장에게 별지5와 같은 조사항목의 사실조회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의 사실탐지 회보서에 대하여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촉탁할 수 있다.

제6조 (법원의 심리)

① 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신청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면밀히 조사, 확인하여 허위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사건본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단 사건본인이 유아이거나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를 심문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신청서와 첨부서류, 사실탐지 회보서, 사건본인 심문에 의하여도 사실관계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참고인 심문을 할 수 있다.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구별

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3호, 시행 2015. 2. 1.]

1.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7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그 정정이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서 가족관계를 확정하는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을 말하는 것이고, 등록부 정정의 전제가 되는 그 판결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직접 어떻게 정정하라고 판시하는 것이 아니고, 「가사소송법」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소송유형의 확정판결을 말한다.

가.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와 같이 정정할 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 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것은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정정을 할 수 없다.

나. 허위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친생자녀인 것처럼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말소하는 것은 법 제105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말소하려면 친생부인의 소 판결 등에 의해야 한다.

2.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가사소송법」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은 법 제104조, 제105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법 제104조, 제105조의 절차가 간이함에 비추어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정된다.

가. 사람이 사망하였는지의 여부나 사람이 사망한 일시를 확정하는데 관하여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은 물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도 정하여진 바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은 당연히 법 제104조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처가 아닌 사람이 처로 착오 기록된 경우에 이와 같은 착오의 혼인은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할 것이나, 단순한 기록착오인 경우에는 법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라 정정허가의 재판을 받아 갑남과 을녀 사이의 혼인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

3. 판결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을 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허가만으로 정정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서 그 정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제정 2009. 7. 1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0호, 시행 2009. 7. 17.]

제1장 출생신고한 부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1조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 ① 출생 기록이 되어 있는 자녀가 출생신고를 한 부 또는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한다.
- ②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가 확인된 자녀(다음부터 ‘사건본인’이라 한다)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 ③ 폐쇄 당시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사건본인에 관한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고,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사건본인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사건본인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제2조 (출생신고)

- ①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에게 출생신고의무자가 있는 경우 출생신고를 다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하여야 한다. 신고의무자는 출생신고서에 폐쇄등록부상 사건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 신고한다.
- ② 가족관계등록관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할 때에 폐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중 혼인관계, 입양관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특정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이기하고, 그 외의 기록사항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결정을 받아 이기한다.
- ③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친생자관계가 남아있는 부 또는 모,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사건본인의 폐쇄등록부와 연결을 끊고 새롭게 작성한 가족관계등록부와 직권으로 연결한다. 출생신고로 사건본인의 특정등록사항이 달라졌다면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사유를, 사건본인의 성과 본이 달라졌다면 직계비속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사유를 직권으로 기록한다.
- ④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새롭게 작성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이 폐쇄등록부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과 다르면 폐쇄등록부에 그 사유를 기록하고, 주민등록법 제14조에 따라 주민등록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3조 (가족관계등록창설)

- ①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를 출생신고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 창설(부모를 모르는 경우 성·본 창설 포함)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한다. 말소된 부모 대신에 진정한 부모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친자관계의 확정판결(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에 실시한 판결은 해당하지 아니한다)에 의한다.
- ②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창설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할 때에 폐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중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특정등록사항, 혼인관계, 입양관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특정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이기하며, 그 외의 기록사항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결정 또는 정정허가결정에 따라 이기한다.
- ③ 그 밖의 절차는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2장 출생신고하지 않은 부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4조 (모와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 경우)

- ① 부가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면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다.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사건본인에 관한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다.
- ② 등록부상 모를 말소한 후에는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폐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중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말소사유를 제외한 기록사항을 직권으로 이기하여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 ③ 친생모를 기록하려면 사건본인의 출생신고인(신고인이 추후보완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출생신고의무자)이 친생모와의 친생자관계 및 출생 당시 친생모가 유부녀가 아님을 소명하여 출생의 추후보완신고를 하거나, 신고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판결(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에 실시한 판결은 해당하지 아니한다)에 의한 정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④ 제3항의 경우에 친생모가 유부녀임이 확인되면, 혼인 외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모를 기록하기 위하여는 출생 당시 모의 법률상 배우자와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쳐야 한다.

제5조 (부와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 경우)

모가 혼인 중 자로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부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절차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때 친생부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인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 (그 밖의 경우)

가족관계등록창설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사람이 부, 모 또는 부모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절차는 전 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친생부인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7조 (부가 출생신고한 경우)

부의 자로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자에 관하여 출생신고한 부와 친생부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는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모가 출생신고한 경우)

부의 자로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자에 관하여 모가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부와 친생부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그 밖의 경우)

가족관계등록창설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사람이 부와의 사이에 친생부인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절차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창설절차 예규

제정 2009. 7. 1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2호, 시행 2009. 7. 17.]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나 친생부인의 판결 또는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창설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허위의 출생신고 외에 진실한 출생신고가 있어 이중 제적부 또는 이중 등록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 창설절차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3조 (첨부서류)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비송사건절차법」제9조제1항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건본인의 폐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각 1통
2. 친자관계의 판결문 및 확정증명서 각 1통

제4조 (창설의 방식)

- ①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시에는 가족관계등록부 폐쇄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임을 알 수 있도록 결정문 사건본인란에 폐쇄등록부상 사건본인의 성명, 등록기준지를 병기하여야 한다.
- ②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양부모 포함)의 특정등록사항을 기록하되, 폐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친자관계의 확정판결문(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에 실시한 판결은 해당하지 아니한다)으로 소명한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9호, 시행 2015. 2. 1.]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는 아래 예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출생자

가. 혼인중의 자인 경우

부(부) 또는 기타 출생신고 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모를 포함한다)의 신고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나. 혼인외의 자인 경우

부(부)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으며 따로 외국인(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부(부)가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하거나(미성년인 경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은 후(성년인 경우), 국적취득 또는 귀화허가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한 후 자녀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 출생사유를 기록한다. 다만, 태아인지 신고된 피인자자는 그 부(부)의 출생신고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2.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 사이의 출생자

가. 혼인중의 자인 경우

자녀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므로 모 또는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를 포함한다)의 신고(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국적법」제2조제1항제1호).

나. 혼인외의 자인 경우

모 또는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의 신고(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를 표시할 수는 없다)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부의 인지가 있으면 그 인지신고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고 부의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상실신고 또는 국적상실통보에 따라 폐쇄하여야 한다.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개정 2016. 11. 25.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2호, 시행 2016. 11. 30.]

1.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자녀와 신고 시기

가. 모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를 포함한다)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음은 당연하나, 외국인 부가 외국에서 행한 출생신고도 신고적격자에 준하여 이를 수리한다.

나. 출생신고는 외국인 부가 이미 출생신고를 하여 부의 성(성)을 따라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

2.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국적법」 제2조제1항제1호).

3. 출생신고서에 기재할 수 있는 사건본인의 성(성)

그 자녀가 외국인 부의 성(성)을 따라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이든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든 불문하고,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르거나 한국인 모의 성과 본을 따라 신고할 수 있다.

4. 출생신고서에 기재할 사건본인의 이름

가. 그 자녀가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부 또는 모의 어느 성을 사용하든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에 기록된 외국식 이름 또는 새로운 한국식 이름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다.

나.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에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외의 새로운 외국식 이름을 기재한 신고서는 이를 수리할 수 없다.

다.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르고 한국식 이름을 기재한 신고서나 한국인 모의 성을 따르고 외국식 이름을 기재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우선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를 경우에는 외국식 이름으로, 한국인 모의 성을 따를 경우에는 한국식 이름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추후보완을 최고(권고)하되,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수리하여 기록한다.

라.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에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그와 다른 성 또는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출생신고서의 기타란에 외국에서 신고된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사건본인의 일반등록사항란에 출생에 관한 사

항을 기록할 때에 외국에서의 성명을 기록한다.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 (기재편) 참조

마. 외국식 성 또는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신고서와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로마자 등이 아닌 그에 대한 당해 외국에서의 발음(원지음)대로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발행한 공문서(예: 거민신분증, 호구부 등)에 의하여 조선족임을 소명한 중국 국적자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 신고인이 해당 중국국적자의 인명에 대하여 그에 대응하는 한국통용의 한자를 소명한 때에는, 그 한국통용의 한자에 대한 한국식 발음의 한글(한자는 함께 기재할 수 없다)을 그 원지음을 갈음하여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표기할 수 있고, 시(구)·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표기된 한국식 발음의 한글을 그 원지음을 갈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무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8호에 따라 처리한다.

바.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후에 한국인 모의 성과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성 · 본 변경절차와 개명절차를 거쳐야 하고, 추후보완신고 또는 등록부의 정정절차를 통해서 이를 할 수 없다.

5. 출생신고 장소

출생신고는 그 자녀가 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하거나 직접 자녀의 등록기준지로 정한 곳을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우송하거나 귀국하여 제출할 수 있다. 귀국하여 제출하는 경우 신고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에도 제출할 수 있다.

6.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면

가. 출생신고서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4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8조의2에 규정된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자녀의 출생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서면(등록사항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7.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시기

삭 제(2010.08.18 제327호)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에 대한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10. 8. 1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26호, 시행 2010. 8. 18.]

1.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복수국적자인 경우에도 현재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2.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가. 남자의 경우

1) 개정된 「국적법」(법률 제10275호)의 공포일(2010. 5. 4.) 전에 이미 만 42세 되는 해의 12월 31일이 경과한 자에 대한 출생신고

복수국적자로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남자는 「병역법」 제72조에 따라 만 41세 되는 해의 1월 1일 병역의무가 해소되므로 개정된 「국적법」의 공포일(2010. 5. 4.) 전에 이미 만 42세 되는 해의 12월 31일이 경과한 경우 종전의 「국적법」(법률 제8892호)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자에 대한 출생신고는 수리함과 동시에 「국적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구)·읍·면의 장은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등록부를 작성한 후, 「국적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국적상실통보를 받아 국적상실을 원인으로 그 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2) 개정된 「국적법」(법률 제10275호)의 공포일(2010. 5. 4.) 전에 만 42세 되는 해의 12월 31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대한 출생신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출생신고를 수리함과 동시에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복수국적자를 발견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적법」 제1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1년 내에 이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국적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국적상실통보를 받아 국적상실을 원인으로 그 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나. 여자의 경우

1) 개정된 「국적법」(법률 제10275호)의 공포일(2010. 5. 4.) 전에 이미 만 22세가 경과한 자에 대한 출생신고

복수국적자로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여자는 개정된 「국적법」의 공포일(2010. 5. 4.) 전에 이미 만 22세가 경과한 경우 종전의 「국적법」(법률 제8892호)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자에 대한 출생신고는 수리함과 동시에 「국적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구)·읍·면의 장은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등록부를 작성한 후, 「국적법」제16조제3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국적상실통보를 받아 국적상실을 원인으로 그 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2) 개정된 「국적법」(법률 제10275호)의 공포일(2010. 5. 4.) 전에 만 22세가 경과하지 않은 자에 대한 출생신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출생신고를 수리함과 동시에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복수국적자를 발견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적법」제1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1년 내에 이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국적법」제16조제3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국적상실통보를 받아 국적상실을 원인으로 그 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의 보존·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8. 10. 23.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2호, 시행 2018. 11. 16.]

시(구)·읍·면에서 접수하고 수리한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에 대한 감독법원 송부와 감독법원의 그 보존·관리방식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1.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의 송부와 그 정리·보존절차

가.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의 법원 송부절차

(1) 신고서류의 편철

① 시(구)·읍·면의 장은 신고서류를 해당 시(구)·읍·면(동·리 별로 구분하지 아니한다)별로 신고서류를 접수순서에 따라 1개월마다 편철하여 관할 감독법원에 송부한다.

② 규칙 제44조에 따라 제출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은 신고서와 같이 규칙 제68조에 따라 감독법원으로 송부한다.

③ 시(구)·읍·면의 장이 위 ①에 따라 신고서류를 편철하여 송부하는 경우, 기록의 장수가 많은 것은 300매 내외를 기준으로 하여 분책·편철하여 송부한다.

(2) 신고서류에의 쪽 번호

송부한 신고서류의 쪽 번호는 1개월 단위로 각 장(첨부서류를 포함한다)의 아래 중앙에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기입하고, 각 목록의 장수표시란에는 신고서류의 각 첫 면의 쪽 번호를 기재한다.

(3) 신고서류의 송부방법

감독법원에 대한 신고서류 송부는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법원에 직접 교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한다.

(4) 송부목록의 편철방법

신고서류에 대한 송부목록 1부는 1개월 마다 편철한 해당 신고서류의 앞부분에 합철하여 송부한다.

(5) 신고서류의 송부목록 표지

신고서류를 송부할 때에는 각 목록의 전면에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한 표지를 붙이고, 그 표지의 우측 상단에 발송인과 직인을 찍어 송부한다.

(6) 발송번호의 기록방법

규칙 제68조의 신고서류를 법원에 송부할 때에는 신고서류송부목록을 문서건명부에 등재하고,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제33호 서식「발송인과 직인」인판(인판)의 번호는 문서건명부의 진행번호를 기록한다.

(7) 흠결있는 신고서와 추후보완신고서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신고서 편철 및 송부방법

① 흠결이 있는 신고서와 그 추후보완신고서에 따라 같은 달 내에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경우에는

두 신고서를 합철하여 감독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흠결이 있는 신고와 추후보완신고가 월(월)을 달리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경우에는 각 기록이 완료된 월(월)에 수리된 다른 신고서류와 같이 편철하여 각 해당 월(월)별로 감독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관으로부터 흠결이 있는 신고서와 함께 추후보완신고서의 송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한꺼번에 하나의 신고로 보아 접수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하여야 한다.

(8) 신고서가 감독법원에 송부 중 분실된 경우의 처리방법

① 신고서가 법원에 송부도중 분실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에 따라 분실한 신고서의 수, 그 종류, 사건본인의 성명, 접수연월일과 분실경위를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고 그 신고사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에는 그 각 증명서에 신고서 분실로 인하여 사건본인의 신고(신청)사항의 기재가 있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한다는 사유를 기재하고, 시(구) 읍 면의 장이 서명 날인한 부전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오류가 있는 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는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에 따라 다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9) 출장소의 신고서류 송부절차

시(구)·읍·면의 출장소가 신고서류를 송부할 경우 그 출장소를 독립된 시(구)·읍·면으로 보아 위(1)항부터 (8)항까지의 절차에 따른다.

나. 감독법원의 정리·보존절차

(1) 신고서류와 그 목록의 기재와의 부합 여부 조사

법원이 신고서류를 송부 받은 때에는 각 송부목록의 기재내용과 송부되어 온 신고서류가 서로 부합하는지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한다.

(2) 신고서류편철부의 표지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제작하여 사용한다. 다만, 감독법원은 법원 사정에 따라 신고서류를 22cm×31cm×26cm(A4용지상자)정도 크기의 상자에 넣어 보존할 수 있다(이 경우 상자의 앞면에 별지 제2호 양식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① 신고서류편철부의 표지는 별지 제2호 양식과 같이 한다.

② 부책표지의 제작 기준

㉠ 재료: 내구성이 강한 화학제품이나 견고한 합지천으로 한다.

㉡ 규격: 표지 규격을 가로 23cm, 세로 29.7cm, 책 허리 11cm로 한다.

㉢ 색상: 신고서류편철부는 밝은 회색으로 한다.

(3) 신고서류편철부의 편철방식

신고서류편철부 신고서류의 분량에 따라 1개월분을 여러 권으로 분책하거나 수개월분을 한권으로 합철하여 보존할 수 있다. 법원의 시정지시에 의하여 송부 받은 서류나, 송부시 빠뜨려 추가로 송부 받은 서류는 신고서류의 목록에 표시한 후 그 서류철의 맨 끝부분(서류의 양이 많을 경우에는 별책으로 조

제할 수 있다)에 편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2)의 단서의 경우에는 1개월분을 여러 상자에 보존하거나 수개월분을 한 개의 상자에 보존할 수 있다. 법원의 시정지시에 의하여 송부 받은 서류나, 송부시 빠뜨려 추가로 송부 받은 서류는 신고서류의 목록에 표시한 후 그 상자(서류의 양이 많을 경우에는 별도 상자로 조제할 수 있다)에 보존하여야 한다.

(4) 신고서류의 철저조사

① 신고서류를 송부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조사하여야 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지시를 하여야 한다.

② 감독법원은 매년 1월 첫째 주 수요일까지 전년도 매월 시정지시 건수를 별지 제3호 양식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신고서류의 목록 보존

신고서류의 각 목록은 위(4)의 조사가 완료된 때에 신고서류와 함께 즉 시(구)·읍·면에서 송부된 대로 1개월마다 신고서류편철부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6) 출장소의 신고서류의 보존

출장소를 둔 시(구)·읍·면의 신고서류는 본사무소의 신고서류 다음에 출장소의 신고서류를 목록과 함께 장부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7) 신고서류의 폐기

① 신고서류의 보존기간 27년이 경과된 것은 한꺼번에 폐기한다.

② 신고서류의 보존기간이 경과된 경우라 하더라도 시(구)·읍·면의 장이 사무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일정기간 그 폐기를 보류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요청기간 동안 해당 신고서류의 폐기를 보류하고 신고서류편철부에서 제거하여 별도의 「폐기보류 신고서류철」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③ 「폐기보류 신고서류철」은 연도별로 시(구)·읍·면의 구별 없이 별지 제4호 양식에 의한 목록을 붙여 보존한다.

④ 폐기보류신고서류는 그 보류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목록의 비고란에 「○○년 ○월 ○일 폐기」라고 기재한 후 즉시 폐기한다.

(8) 신고서류편철부의 보관방법

① 신고서류편철부를 보관하는 창고는 소화시설 및 습기제거시설(환풍기 등)을 갖추어야 하며, 창고 내에는 화재의 염려가 있는 물건(복사기 및 약품 등)을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② 신고서류편철부는 서가에 시(구)·읍·면별 및 연도별로 구분·진열하여 보관한다.

③ 창고의 출입통제

신고서류편철부를 보관한 창고에는 법원의 감독공무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허용하여서는 안 되며, 창고의 출입문에는 「담당 직원 외 출입을 금함」이라는 붉은색 글씨의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

2.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신고서류의 열람

가.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신고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5호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신고서류에 대하여는 등·초본이나 인증 있는 사본을 교부할 수는 없다. 다만,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사건을 처리한 시(구)·읍·면 담당공무원의 청구가 있으면 인증 없는 단순한 사본은 교부할 수 있다.

다. 친양자입양신고서류의 열람청구에 대해서는 규칙 제72조제2항 및 “나”항의 규정을 따른다.

라. 열람은 법원주사 등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

마. 열람은 무료로 한다.

바. 위 “가”항의 열람신청서는 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서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3. 특종신고서류의 보존·관리

가. 특종신고서류는 법원에 송부하지 아니하고 그 신고서류를 접수한 시(구)·읍·면에서 연도별로「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하되,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 등이 없는 한 영구보존 하여야 한다.

나. 일반신고와 특종신고가 혼합된 신고서류는 등본을 작성하여 원본은 감독법원에 송부하고, 등본은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한 관서에서 “가”항에 따라 보존한다.

4. 신고서류의 폐기절차

신고서류를 폐기할 때에는 가정법원장(지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온 마을이 함께하는 탄생축하프로젝트 첫 번째 ‘증명’

국제아동인권센터는 모든 아동의 탄생이 축복받는 세상을 꿈꾸며 탄생축하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북은 그 첫 번째, ‘증명’을 돕기 위한 첫 번째 결과물입니다.

실태조사와 법률지원, 가이드북 제작에 이르는 긴 여정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개인후원자

강민진, 곽현희, 김관우, 김금채, 김도경, 김유진, 김진선, 김현기, 김현미, 박민경, 백두산, 송영현, 송지웅, 신동훈, 신유나, 안모하, 안새미, 안현주, 윤소라, 이가현, 이준서, 이준택, 이지은, 이한나, 임종구, 장민정, 장수정, 전인기, 정소영, 조예진, 최희진, 한애영, 황주연

재단 및 기업

법무법인(유한) 지평, (주)원앤아워스, 해피랄라

재단법인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모금함 89명

카카오같이가치 모금함 3,541명

재단법인 해피빈 모금함 278명

* 후원자님 모두의 성함을 기재하고 싶었지만, 무기명 혹은 아이디 후원이 있어 일부만 포함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탄생축하 프로젝트는 이제 첫 시작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탄생이 축하받고 기록되는 그 날까지 국제아동인권센터와 두루를 비롯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단 한 명의 아동도 빠짐없이 출생이 등록되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온 마을이 함께하는 탄생의 축하 - 모두를 위한 출생등록 -

- 기획: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 집필: 강정은, 김희진, 마한열, 엄선희
- 감수: 마상미, 정병수
- 디자인: 박수철
- 발행처: 북스포에브리원_No. 25100-2012-000073
- 발행일: 2019년 3월

- 주소: [03169]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10길 17, 인왕빌딩 102호
- 이메일: incrc@incrc.org
- 웹사이트: incrc.org
- 전화: 02-741-3132



